

# 수수료 부과기준

**제 1 조(목적)**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제 58 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적용범위)**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 3 조(수수료의 종류)** ①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(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.)에 적용되는,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 다만, 개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설정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(투자신탁보수, 운용보수 또는 관리보수)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(집합투자업자보수와 별도로 집합투자계약에서 집합투자업무매매보수를 정할 수 있음)

나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성과 등을 평가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성과보수: 운용성과보수, 조기약정성과보수, 매각(성과)보수, 상장성과보수 등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등과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기구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편입됨

**제 4 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**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** 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상품 승인과정에서 수수료의 부과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나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**제 6 조(설명의무)** 회사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,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(투자광고)** 회사는 투자광고(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광고는 제외함)를 하는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**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 또는 수익자 동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 9 조(공시)** 회사는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 (2015.1. )

**제 1 조 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15 년 1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 (경과규정)** 이 기준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는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 (2023.9. 7)

**제 1 조 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23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 (경과규정)** 이 기준의 개정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는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.